

심사기준조회

개최일/시행일	2007-12-31	일련번호	01-01	관련근거	고시 제2007-143호(치료재료)
구분	고시	심사지침개최일			
제목	봉합사 산정기준				
결정사항/복지부 행정해석 내용					

1. 산정방법 :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, "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"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.

- 다 음 -

- 가. 천자, 생검,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
- 나. 중재적(경피적, 내시경적) 시술시 사용한 경우
- 다. 다른 특수기기(레이저, 감마나이프 등)를 이용하는 경우
- 라.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

2. 기타 : 봉합사 제품명(Catalog No.), 크기(Gauge),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(수술기록지)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.

(고시 제2007-143호, 2008.1.1. 시행)

■ 고시 개정 사유 : 상대가치연구결과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
(봉합사 산정기준 관련해석(보험급여과-172호, '08.1.22.) 참조)

■ 변경 전 고시번호 : 고시 제2006-75호

■ 변경 전 고시내용 :

봉합사 산정기준

"처치 및 수술시 [내시경하 수술포함] 사용된 봉합사는 안면수술,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, 장기이식수술, 불임의 처치 및 수술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.

- 다 음 -

1.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처치 및 수술 항목 : '불임' 참조
2. 산정방법 : 해당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 실사용량. 다만, 안면수술 이외의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중 해당수술을 위해 절개한 피부봉합(Skin Suture)에 사용된 봉합사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수 없음.
3. 기타 : 봉합사 제품명(catalog No.), 크기(Gauge),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(수술기록지)에 반드시

기재하여야 함.



심사기준조회

개최일/시행일	2008-01-22	일련번호	02-01	관련근거	보험급여팀-172호
구분	행정해석	심사지침개최일			
제목	봉합사 산정기준 관련 해석				
결정사항/복지부 행정해석 내용					

1. 우리부 보험급여팀-147호 관련입니다.
2. 봉합사는 상대가치점수 개정(2008.1.1 시행. 고시 제2007-138호)시 처치 및 수술등의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동비용을 차감반영하여,
별도 산정키로 결정된바, 해당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사 비용이 미구축되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 봉합사를 별도
산정 할 수 없음 (붙임1)
3. 또한, 봉합사 산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-143호, 2007.12.31)에 의거, 처치 및 수술이외의 행위 (붙임 2 참조) 및 제1항 가~라호에
해당하는 처치 및 수술 (붙임3 참조)시 봉합사 비용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음.

=>붙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/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/심사정보/알림방/공지사항/공통

순번714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